

## 몽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몽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 아래부터 《체약쌍방》이라고 한다.)는 체약쌍방의 호상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협조를 강화할것을 희망하면서,

체약일방의 투자자들이 체약상대방의 령토에 투자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체약쌍방의 경제적번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자주권과 평등, 호혜, 호상 존중과 신뢰의 원칙에 부합되게 투자 관계가 추진되고 경제적협력이 강화될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에서;

1. 《투자》란 체약일방의 투자자들이 체약상대방의 법과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방의 령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의미하며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동산, 부동산 및 전당, 저당 등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

4. 《령역》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부리 산생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권과 관련된 지를 그리고 합병적인 소득을 포함하여 투자로

3. 《수익금》이란 리공, 배당금, 리자, 자본수익, 사용료, 지적

회사, 경제협회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법인

그 계약인방의 령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 계약 어느 인방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조직되어

연인

1) 계약 어느 인방의 법에 따라 공민 또는 영구 거주자로 되는 자

2. 《투자가》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의 성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투자한 재산이 어떠한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도 투자로서의

를

공, 자금모집, 외화의 판매, 구매와 같은 투자와 관련된 활동

6) 기업설비보장과 취득, 시험을 위한 조직과 운영, 재산권의 취득

약에 따라 부여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임의의 권리

판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에 요구되고 법과 제

5) 영영허가, 자연부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생산품의 제조, 리용,

4) 지적소유권, 특허권, 상호, 기술비결, 기술공정, 영영전용권

한 권리

3) 화폐에 대한 청구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임의의 리행에 대

2) 회사의 주식, 주권, 사채 혹은 기타 형식의 회사채가 형태를

- 1) 몽골의 령역이란 몽골의 자주권과 관할권이 행사되는 령토를 의미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역이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기의 자주권과 관할권이 행사되는 령토, 령해, 령공, 대륙붕과 전속경제수역을 의미한다.

## 제 2 조 투자의 촉진과 보호

1. 매 계약당사자는 각기 자기 나라의 령역에서 계약상대방 투자가의 투자를 장려하며 자기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매 계약당사자는 자기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계약 어느 일방의 령역안에서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계약상대방의 공민들이 사증과 사업허가를 받는데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
3. 계약일방의 투자가들이 계약상대방의 령역에 진행한 투자는 장기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 받는다.
4. 매 계약당사자는 자기의 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 어느 일방의 투자가들이 자기의 령역에 투자하는것들에 대한 투자의 관리, 유지, 리용, 향유와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다.

### 제 3 조 투자에 대한 대우

1. 계약일방 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익금과 활동은 계약상대방의 영역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제공받는다.  
우에 지적된 대우는 제 3 국 투자가들에게 제공하는 대우보다 못하지 않는다.
2. 계약일방은 자기의 영역안에서 계약상대방의 투자가들에게 투자의 관리, 유지, 리용, 향유, 처분과 관련하여 공평하면서도 자국 또는 제 3 국의 투자가들에게 주는것보다 못하지 않는 대우를 제공한다.
3. 이 조의 1 과 2 는 계약일방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현성원국이거나 앞으로 성원국으로 되는것으로 하여 또는 계약쌍방이 성원국으로 되는 2 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하여 임의의 제 3 국 투자가들에게 부여하는 우대와 특혜들을 계약상대방 투자가들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제 4 조 몰수 와 보상

1. 계약상대방의 영역안에서 실현된 계약일방 투자가들의 투자는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취해지거나 차별조치가 아닌 경우 그리고 즉시적이고 동가적이며 효과적인 보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몰수 혹은 국유화되거나 또는 그런 성격이나 효과를 가지는 조치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1. 민체약당사자는 자기의 법과 규정의 따라 다음의것을 포함하여 체약상대방의 투자자들이 자기의 령역에서 진행하는 투자금

### 제 6 조 투자금과 수익금의 이전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지불은 즉시에 응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자는 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방법으로 보상해주며 이 보상은 체약상대방 국민이나 민의의 제 3쪽 약상대방은 그와 관련하여 응분한 보상, 배상, 원상회복 혹은 다른 투자자가 체약상대방령역에서 진행한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체 반란, 민간소요, 폭동 또는 그와 유사한 사변으로 인하여 체약상대방의 령역에서 인어난 전쟁, 무장충돌, 비상사태, 혁명,

### 제 5 조 손해 보상

2. 체약상대방의 투자자는 자기 투자자의 전부 혹은 그 일부가 국유화 혹은 몰수되는 경우 체약상대방의 권한있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몰수행위의 반세여부에 대한 공의와 투자물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상금액은 몰수가 진행되기 직전 또는 몰수가 공개되기 직전의 투자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여 상임적으로 합리적인 리자들에 따라 리자리를 포함시켜 지체없이 자유롭게 지불되어야 한다.

과 수익금의 이전을 허용한다.

- 1) 리윤, 리자, 배당금 및 기타 합법적인 소득
- 2)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판매 또는 청산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
- 3) 투자와 관계되는 대부상환금
- 4) 이 협정의 1 조 1. 4)에 명기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지불금
- 5)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채용된 사람들이 번 로임이나 기타 합법적인 소득

2. 이 조의 1 에 따르는 지불금들의 이전은 송금당일의 공식환률에 준하여 지체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 제 7 조 대 위 권

채약일방 또는 그의 대리기관이 채약상대방의 영역에서 자기 투자자가 진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제공한 담보에 따라 자기측 투자자들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 채약상대방은 채약일방이나 그의 대리기관에 투자자의 임의의 권리와 청구가 이전되는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와 청구에 대하여 채약일방이나 그의 대리기관의 대위를 인정해야 한다.

대위된 권리와 청구는 본래의 권리나 청구를 초월하지 말아야 한다.

## 제 8 조 계약쌍방사이의 분쟁해결

1.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쌍방사이의 분쟁들은 가능한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2. 계약쌍방이 분쟁발생후 6 개월안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어느 한 계약일방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제기된다.

1) 계약쌍방은 중재요구접수후 60 일안에 각기 1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 2 명의 중재인들은 임명된 날부터 60 일내에 또는 합의에 따라 계약쌍방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 3 국의 공민을 선출한다.

2) 계약쌍방은 3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부터 60 일내에 그를 중재재판소 소장으로 승인해야 한다.

3. 이 조의 2 에 지적된 기간내에 필요한 성원들이 임명되지 않거나 필요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계약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해당 성원들을 임명하여 줄것을 요청할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계약일방의 공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상기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 부소장에게 필요한 성원들의 임명을 요청한다.

만일 부소장이 계약일방의 공민이거나 그 역시 기타 이유로 상기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 그 어느 계약일방의 공민이 아니면서

부소장 다음가는 직위를 가진 국제사법재판소성원에게 필요한 성원들의 임명을 요청한다.

4.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들의 조항과 계약쌍방사이의 기타 협정들,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에 준하여 사업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가결로 재결을 채택한다.

중재재판소의 결정들은 최종적이며 계약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5. 매 계약당사자는 자기측 중재원 및 중재참가비용을 부담한다.

소장의 비용과 나머지 비용은 계약쌍방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 제 9 조    계약일방의 투자가와 계약상대방사이의 분쟁 해결

1. 투자와 관련한 계약일방의 투자가와 계약상대방사이의 분쟁은 가능한 분쟁당사자들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분쟁해결요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 분쟁이 친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투자는 다음의 기관들에 사건을 제기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에서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재판 및 행정기관



2) 유엔무역법위원회 중재규정에 따라 설립된 특별중재재판소

3. 특별중재재판소는 다수가결로 판결한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분쟁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쌍방은 판결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4. 분쟁각측은 그의 중재원과 중재에 참가한 대표들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소장과 기타 비용은 분쟁쌍방이 동일한 몫으로 나누어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판결할 당시 분쟁쌍방의 어느 일방에게 비교적 많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할것을 지시할수 있다.

#### 제 10 조 기타 규정의 적용

계약일방의 법 혹은 계약쌍방사이에 현존하거나 앞으로 체결할 국제협정조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우보다 더 특혜적인 대우를 계약일방 투자자들의 투자에 주게 되어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다 특혜적인 대우로 확대시킬수 있다.

#### 제 11 조 협의, 수정, 보충

1. 계약일방은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임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할것을 계약상대방에 제기할수 있다. 이러한 협의

는 어느 한 계약일방의 제기에 따라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합의 되는 장소와 시간에 진행된다.

2. 계약쌍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따라 서로 합의하여 이 협정을 수정 및 보충할수 있다.

## 제 12 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의 조항들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이전 또는 이후에 계약상대방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계약일방의 투자자들이 계약상대방의 령역에서 진행한 모든 투자에 적용되며 이 협정의 효력발생이전에 발생한 불일치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3 조 효력발생, 유효기간, 종결

1. 이 협정은 계약쌍방이 각기 자기의 국내법적절차를 거쳐 서면 형식으로 호상 통지한 다음달 첫날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2. 계약 어느 일방이 이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유효기간 만기 1년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방에 협정을 폐기하자는 통지를 보내지 않는 한 이 협정은 10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첫 10 년동안의 유효기간이 만기된후 계약 어느 일방이 임의의 시각에 이 협정을 폐기할수 있으나 최소한 1 년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방에 통지해야 한다.
4. 이 협정 제 1 조로부터 13 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이 폐기되는 날 이전에 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폐기되는 날부터 10 년간 계속 적용된다.

각기 자기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이 협정에 수표하였다.

이 협정은 2003 년 11 월 /9일 평양에서 조인되었으며 몽골어, 조선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모든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문에 준한다.

몽골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